

제 4 장 총 회

제18조 (총회)
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19조 (정기총회 및 소집일자)

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소집 한다.

이때 회장은 회의일정, 목적,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최소 7일전에 각 회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임시총회 및 소집절차)

임시총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4. 감사가 제14조 4항 4호 규정에 의해 소집을 요구할 때 상기의 2, 3, 4호 규정의 경우에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장은 총회소집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.

제21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규약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
3.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
4.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실적,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협회 해산 결의 등 중요한 사항
6. 기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 사항

제22조 (총회의 의결방법)

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,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.

③ 총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총 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23조 (의결권)

- ① 본회의 정회원 모두 의결권을 갖는다.
- ② 회장 및 회원이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.
 - 1.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